

## 알기쉬운 세무상식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국세청 과세특례 혜택을 받던 제과점이

이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엄정한 세무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과점 운영자는 다소 복잡한 세무처리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적절히 응용하여 자기 사업장의 세무처리에 임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과세특례와 일반과세를 간략히 비교하고 일반과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 도움이 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납세하는 세제로서 어느정도 기장능력을 필요로 하나 소규모사업자는 기장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편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자가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더 이상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법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과세특례자
대상	과세특례자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중 연간매출액이 3,600만원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900만원) 미만인 사업자
과세표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
세율	10%	과세표준의 2%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3.5%)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과세표준 × 2%(3.5%)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 계산서 교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교부 장부기장	매입매출장 기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 계산서를 보관할때는 기장한것으로 간주
의무 매입세액공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매입금액의 10%공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5%공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년에 4회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에 자진 신고납부 예정신고시 직전과세기간 공급기액이 7천 5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직전납부 세액의 50%결정고지	1년에 2회 확정신고기간에만 신고 납부하고 예정신고기간에는 정부가 직전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고지서발부(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일때는 제외)
소액불징수	적용하지 아니함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60,000원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함
기산세	미등록 · 미검열기산세 개인:공급기액의 1% 법인:공급기액의 2% 신고납부 불성실기산세 납부세액의 10%(개인 · 법인)	미등록 · 미검열기산세 공급기액의 0.5% 신고납부 불성실기산세 납부세액의 10%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로 과세특례 적용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기준금액(개인사업자 연간매출액 3,600만원)이 상이 되면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된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 준다. 둘째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 자신이 신고, 과세특례 권한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할 경우이다.

이때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율도 2%에서 10%로 인상되고 여러가지 의무가 많아져서 사업자가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나 거래내용을 성실히 장부에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거래시마다 성실히 주고 받는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매입금액의 10%)을 전액공제 받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확장시 투자액에 관한 부분) 계절적으로 원부자재를 일시에 많이 매입할 때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져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

옆의 표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비교한 표이다.

## 일반과세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

- 매입, 매출장 기장
-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납부
- 신고시 첨부서류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매입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해당사업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확정신고시에 해당사업자에 한함)

위와같이 과세특례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자로 전환되면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보다 세부담이 더 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내용을 정확히 장부에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주고 받으며 정확한 세무회계처리를 하게되면 절세면에서도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는 전문인 세무사와 상의하여 장부기장 및 신고납부 업무를 처리하면 약간의 수수료로도 가능하므로 이 방법이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61]